

[별지 제3호서식]

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(제496조 관련)

1. 양 식

석 면 함 유	
	
신 호 어: 발암성물질 유해 · 위험성: 폐암, 악성종괴종, 석면폐 등	
예방조치 문구: 취급 또는 폐기 시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취급근로자는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. 공급자 정보:	

※ "공급자 정보"에는 석면해체 · 제거 사업주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

2. 규 격

규 격
300㎢(가로×세로) 이상 (0.25×세로)≤가로≤(4×세로)